

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

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.

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,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.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.

[편집자 주]

하도급업체는 계약체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총 계약금액의 3% 이상 전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% 이상인 원재료가 20% 이상 급등할 경우 남은 공사 및 납품물량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. 만약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때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대상 업종은 건설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자동차, 전자, 조선, 전기, 기계, 섬유, 음식료, 조선 임가공, 엔지니어링, 건설자재, 자기상표부착제품 등이다.

○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

1.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 급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함(제15조)

- 계약 체결 후 아래 각 호의 사유발생 시 30일 이내에 상호협의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

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

-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
-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

2. 원사업자가 공공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함(제20조)

- 하도급대금 기성주기를 장기로 설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키 위함

3.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 이행 시 수급사업자의 계약 해제, 해지권 부여함(제25조 제1항 제8호)

4. 시행 : 2009년 1월 10일부터